

● 제29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보호 및 자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4. 2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421

I. 조례안 개요

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의외 10명
- 나. 발 의 일 : 2020. 4. 3.
- 다. 회 부 일 : 2020. 4. 8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·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‘텔레그램 N번방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.(안 제15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최근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, 유포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‘텔레그램 N번방 사건’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
-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용어나 그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곤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동 개정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착취 등의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,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(안 제15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,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15조의2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포 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‘디지털성범죄’는 사이버폭력이나 온라인 성폭력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통신환경에서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제작, 유포, 참여, 소비 중 사이버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제작부분을 포함하고 있다¹⁾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위법에서 따로 규정된 용어가 없어, 디지털 성범죄, 디지털성폭력, 사이버성폭력, 온라인성폭력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,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바, 개정안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

1) 한국여성정책연구원(2019),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, pp. 12.

료됨.

※ 디지털성범죄는 그 자체가 불법적 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폭력보다는 범죄라는 용어를 차용했다고 할 수 있음.

- 또한 “N번방 사건”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 개정안은,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를 규정하고,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,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.